

온라인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직매입거래)



공정거래위원회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자가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상품의 납품거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온라인쇼핑몰과 납품업자 사이의 상품 직매입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이 표준거래계약서보다 더 상세한 사항을 계약서에 규정하거나 특약으로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000(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직매입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상품의 직매입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갑”은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이에 대우의 차별을 두지 않고, 수수료의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 등에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도입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 [계약기간]

- 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____년 __월 __일부터 __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가 서면 통지에 의하여 계약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② “갑”은 “을”과 “을”의 납품업자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을”과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갑”은 위 ②항을 포함한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과 “을”은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후에도 ()년 동안 다음 각 호에 관한 의무를 부담한다.

1.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2. 하자책임·보증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제5조 [상품발주서]

① “갑”은 [별지]의 상품발주서에 상품의 종류·수량·가격·납품장소·납품기일을 기재하여 “을”에게 상품을 발주한다.

② “갑”은 상품을 발주하는 즉시 “갑”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이 기재된 상

품발주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계약서에서 같다)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③ “갑”은 상품발주서 외에 이에 준하는 매입전표, 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상품을 발주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서면에는 제1항과 제2항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갑”은 상품발주서가 납품기일 이전에 “을”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품발주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상품을 제조·주문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검수기준 및 품질검사]

① “을”은 납품하는 상품에 관하여 “갑”의 검수기준에 따른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갑”은 상품의 품질, 규격, 관련 법령의 허용기준 등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관한 검수기준을 사전에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③ “갑”은 “을”이 납품하는 상품에 대하여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한 경우 “을”에게 해당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공인된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은 후 검사결과를 해당 상품의 납품 전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다만 상품의 특성상 추가적인 공인기관의 검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해당 상품의 품질적합 여부가 외관상 뚜렷이 판단될 수 있는 등 처음부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을”이 납품한 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합격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갑”은 해당 상품의 납품중지 및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이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⑥ “을”은 검수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불합격판정 통보일로부터 ()일 내에 “을”의 부담으로 인수하여야 한다. 단, 지정일 내에 “을”이 불합격된 상품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갑”은 “을”의 부담으로 “을”에게 반송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7조 [상품의 납품]

① “갑”이 제5조의 상품발주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교부하는 경우, “을”은 지정된 납품기일 및 장소에 차질 없이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납품기일에 상품의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기일의 전일까지 “갑”에게 납품 기한의 연장을 요청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갑”은 “을”이 상품을 납품하면 제6조의 검수기준에 따라 검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을”이 이 계약에 따라 납품하는 상품을 지체 없이 수령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갑”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4. 일정한 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으로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갑”이 상품의 수령을 지체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을”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갑”과 협조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1.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한 상품이 오손 또는 훼손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2. “을”이 이 계약의 내용과 다르게 상품을 납품하는 경우

⑤ “갑”은 납품과 관련하여 “을”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 경우 “을”이 “갑”의 요구에 응하지 않더라도 “갑”은 “을”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1.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2. 판촉행사의 실시를 목적으로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제8조 [상품대금 지급 및 감액금지]

① “갑”은 해당 상품수령일부터 ()일 이내에 해당 상품의 대금을 현금, 기업구매 전용카드와 같은 현금성 결제수단으로 지급한다.

※ 상품대금은 상품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여야 함

② “갑”은 “을”에게 납품받은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품받은 날부터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서 “을”과 서면으로 합의한 후에 감액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상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패하기 쉬운 특성을 지닌 신선상태의 농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건조·염장 등 가공을 하지 아니한 상품(이하 “신선농·수·축산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대금은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감액할 수 있다.

1.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2.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된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갑”은 “을”과 합의하여 이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상품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이 확정된 이후 지체 없이 상품대금에서 공제된 항목별 금액을 아래 양식에 따라 “을”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명칭	종류	통지시기	통지내용
(예시) 판매 인센티브	(예시) 신상품장려금	대금 지급일 ¹⁾ 기준 () 영업일 전	금액, 관련 상품명 ²⁾ 등
(예시) 판촉비	(예시) 증정 행사비	대금 지급일 ¹⁾ 기준 () 영업일 전	금액, 상품명, 상품별 판매 수량 등

- 1) 해당월 공제내역이 확정된 이후의 대금지급일에 한함
- 2) 금액 계산에 상품을 고려하지 않는 판매장려금인 경우는 제외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에서 “을”이 요청하는 경우 “갑”은 지체 없이 “을”에게 공제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입금표, 세금계산서 등) 및 추가 자료(공제 항목별 계산 방법, 적용 기준 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통지 및 제5항에 따른 증빙서류 및 추가자료 제공은 “갑”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을”에게 통지할 내용을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을”이 통지 내용 열람을 위해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 가격의 조정]

① 을은 계약 체결 이후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납품하는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납품 가격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계약서상 을이 납품 가격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내용(예시: 공급단가는 을이 결정한다.)이 별도 조항으로 반영된 경우 이 조항 제외 가능

1. 납품 가격 조정 대상이 되는 상품의 공급원가 변동, 공급조건 변화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그 밖에 납품 가격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결과 갑과 을이 계약서 내용 변경에 합의하는 경우 갑은 계약 변경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을에게 주어야 한다. 이 때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에 따른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갑과 을이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0조 [상품의 반품]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거래관행상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안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납품받은 상품에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또는 하자가 있는 경우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갑”이 부담하고 “을”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4. 명절용 선물세트, 계절용품 등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반품하는 경우 : ()

※ 반품조건 - 반품기한, 반품수량의 상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을 기재

5. 신·구 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을”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이 경우, “을”은 해당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갑”에게 제출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품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납품일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외견상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별도의 합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선농·수·축산물을 반품하는 경우에는 “갑”이 납품받은 시점부터 해당 상품의 검수 및 매입을 마치고 전까지의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일을 초과할 수 없다)에만 반품할 수 있다.

제11조 [판매장려금]

① “갑”은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조건에 따라 “을”로부터 판매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명칭	종류	지급목적	지급시기	지급횟수	판매장려금률(액)
판매 인센티브	(예시) 성과장려금	“갑”이 일정한 양 이상의 상품을 판 매 시 판매독려	성과 달성 시	연 ()회	초과판매액의 ()%

② 제1항의 판매장려금률(액)의 결정기준·결정절차 및 변경사유·변경기준·변경절차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결정기준:
2. 결정절차:
3. 변경사유:
4. 변경기준:
5. 변경절차:

- ※ 결정기준 및 변경기준 - “갑”과 “을” 간의 상품거래량 및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기간, “갑”의 판매장려금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제 부과하는 판매장려금의 수준을 결정·변경하기 위한 기준을 기재
- ※ 결정절차 및 변경절차 - 담당 MD와 납품업체 간의 협의절차, 협의 불성립 시 재협의절차, 결정된 판매장려금 수준의 통지 및 확인 등과 같은 절차적 사항을 기재
- ※ 변경사유 -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의 변동과 같이 판매장려금률의 인상/인하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

③ “갑”은 계약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판매장려금과 관련한 사항을 “을”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을”에게 제1항의 판매장려금 외에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판매촉진행사 참여 등]

①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려면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이하 “판촉행사약정서”라 한다)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성격·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 판촉행사 실시에 따라 “을”이 실제 부담한 판촉비용 분담비율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 “갑”이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을”을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을”이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행사의 자발성·차별성을 인정하여 제5항과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 조정 가능

제13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이나 상품원가, 판촉행사 조건 등 경영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5.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6. “갑”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을”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

제14조 [손해배상]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5조 [지식재산권 등]

- ①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은 제3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초상권 등) 및 제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갑” 또는 “을”과 제3자 사이에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민·형사상의 법적 분쟁이 제기된 경우 “을”은 자신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하고, 이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16조 [상표관련특약]

① “을”은 “갑”에게 “을”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제3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다.

②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상품을 납품하면서, 자신이 직접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않은 상품에 상표라벨을 교체하여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하고 거래를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 “갑”의 고객 및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7조 [제조물책임]

“을”이 납품하는 상품이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으로 인하여 “갑”의 고객 또는 제3자에게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을”은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갑”의 고객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제18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제19조 [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20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기관이 공개를 요청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년간 계속된다.

제21조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의 서면상 합의가 있는 경우
2. “갑” 또는 “을” 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 또는 “을” 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3.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부실정후기업으로 판단되어 이에 관한 절차가 개시된 경우
4. “갑” 또는 “을” 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 이 “갑” 에 대하여 갖는 상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5. 관계기관에 의하여 영업정지, 영업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6. “을” 이 납품한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 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납품 또는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7. 기타 원활한 계약이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갑” 또는 “을” 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정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 3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2조 [상계]

제21조에 따라 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이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 시점까지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

제23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 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 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

중재규칙: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

제24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0000년 00월 00일

(갑) 주소 : 00시 00구 00동

상호 :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 0 0 0 (인)

(을) 주소 : 00시 00구 00동

상호 : □□회사

대표자 : 0 0 0 (인)

[별지]

상 품 발 주 서

“을” 은 “갑” 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납품한다.

- 1. 납품장소 :
- 2. 납품기일 : 20 년 월 일까지
- 3. 납품 대상 상품 내역

(단위: 개, 원)

상품명	수량	공급단가(VAT 별도)	계약금(VAT 별도)

4. 기타 사항

0000년 00월 00일

(갑) 주소 : 00시 00구 00동
상호 : 주식회사 000
대표이사 : 0 0 0 (인)